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을 위탁기업으로 한정〉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06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을 위탁기업으로 한정	3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6.
3. 회부연월일 : 2024. 7.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수탁·위탁기업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위탁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과 유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원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43조의3제2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을 위탁 기업으로 한정(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2호)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에만 부여하도록 하고, 그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역시 위탁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u>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u>서면으로</u> 체결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 ----- ----- ----- ---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 -----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제43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④·⑤ (생략)	----- 아니한 위탁기업 ④·⑤ (현행과 같음)
----------------------------	--------------------------------

‘비밀유지계약’은 기술유통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임¹⁾.

비밀유지계약 체결 제도는 2021년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계약체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계약체결을 회피하려는 동기는 위탁기업에게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문의 문언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 모두에게 부여하면서²⁾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1호, 2021. 8. 17. 개정, 2022. 2. 18. 시행)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개정 당시 논의에 따르면, 양측의 의무이행을 근거로 하여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된 명분과 동력을 부여하려던 것으로 보임 -제385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 제1차 회의록(2021. 3. 4)

이에 따라 현행 조문에 따를 경우 상대방의 계약체결 거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 대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관련한 수탁기업의 자발적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는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당초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³⁾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⁴⁾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탁기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법문에 명확히 규정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따라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를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에서 위탁기업에만 부여(안 제21조의2제1항)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위탁기업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43조제3항제2호)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제도를 도입⁵⁾하였으나 계약체결 의무를 원사업자에 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원사업자에게 한정하고 있음⁶⁾. 현행법의 수탁·위탁거래는 하도급거래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참고자료 3)되므로, 제도 운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표 1]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관련 하도급법과 비교

구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부과대상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	원사업자
의무위반 제재조치 대상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	원사업자
주요 제재조치	과태료	과징금, 벌금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4호, 2021. 8. 17. 개정, 2021. 8. 17. 시행)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원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547)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중 수급사업자를 삭제하고 원사업자에게만 계약체결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에 계약체결의무를 부여할 경우 수탁기업이 책임 없는 사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의무 및 과태료 적용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한정하기 위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67

【참고자료】

1

현행법령의 비밀유지계약 및 과태료 관련 규정

□ 상생협력법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5.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6.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7.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8.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제16조(수·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2호			
1) 대기업인 경우		500만원		
2) 중소기업인 경우		300만원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본문)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탁기업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탁기업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3-1. 및 3-2.」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탁기업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업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 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탁기업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탁기업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위탁기업은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탁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위탁기업에게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3-3.」에서 기재한 내용 이외에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위탁기업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탁기업은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위탁기업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위탁기업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기업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탁기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1.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3-1. <1-1.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3-2. <1-1.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3-3. <1-1.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액 규모가 커야 하며, 수·위탁거래는 규모의 기준이 없음

- 하도급은 7가지 거래 적용, 수·위탁은 30가지 거래로 교차거래 가능

※ 30가지 수·위탁거래 유형에 7가지 하도급거래 유형이 포함

구 분	상생협력법 (위탁기업-수탁기업)	하도급법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정의	■ (위탁기업) 제조, 판매, 수리, 공사, 가공,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 (위탁대상) 물품 등의 제조, 수리, 공사, 가공,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 (수탁기업) 그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원사업자) 원사업자가 ■ (위탁대상)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하고 ■ (수급사업자)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규모 제한	■ 위탁기업의 규모제한 없음 * 단,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조사(상생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중기업 이상일 것 요구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인 경우 : (매출액)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단,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 제외: 제조·수리위탁(20억원 미만), 건설위탁(30억원 미만), 용역위탁(10억원 미만)																					
예시	· 대기업→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O): 중견기업법 §13 · 대.중견기업→중소기업 (O) · 중견기업→중견기업 (x) · 중소기업→중소기업 (O) * 소기업이 위탁기업일 경우 수위탁거래에는 해당되나 조사 및 제재대상에서 제외	· 대.중견기업→중소기업 (O) · 대기업→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2조원 초과 중견기업→8백억~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대금지급에 한해 하도급거래 인정(하도급법 §13)																					
원사업자와 위탁대상의 관계	■ 위탁기업과 위탁대상의 관계가 30가지 가능 * 제조^①, 판매^②, 수리^③, 공사^④, 가공^⑤, 용역^⑥ (6) X 제조^①, 수리^③, 공사^④, 가공^⑤, 용역^⑥(기술개발 포함)^⑦ = 30가지 * (예시) 제조업자→제조위탁 (O) 용역업자→제조위탁 (O) 제조업자→공장건설위탁 (O)	■ 원사업자와 위탁대상의 관계가 7가지로 제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원사업자</th><th>수급사업자</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제조위탁</td><td>제조</td><td>제조</td></tr> <tr> <td>판매</td><td>제조</td></tr> <tr> <td>수리</td><td>제조</td></tr> <tr> <td>건설</td><td>제조</td></tr> <tr> <td>수리위탁</td><td>수리</td><td>수리</td></tr> <tr> <td>건설위탁</td><td>건설</td><td>건설</td></tr> <tr> <td>용역위탁</td><td>용역</td><td>용역</td></tr> </tbody> </table> * (예시) 용역업자→제조위탁 (X) 제조업자→공장건설위탁 (X)	구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제조	제조	판매	제조	수리	제조	건설	제조	수리위탁	수리	수리	건설위탁	건설	건설	용역위탁	용역	용역
구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제조	제조																					
	판매	제조																					
	수리	제조																					
	건설	제조																					
수리위탁	수리	수리																					
건설위탁	건설	건설																					
용역위탁	용역	용역																					
제한 사항	■ 위탁기업의 업과는 무관한 물품 등의 제조, 수리, 공사, 가공, 용역을 위탁할 수 있음 * (예시) 자동차제조업자→엔진제작 위탁 (O) 자동차제조업자→작업복제조 위탁 (O)	■ 원사업자의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수리, 건설, 용역수행 행위를 위탁할 것 * (예시) 자동차제조업자→엔진제작 위탁 (O) 자동차제조업자→작업복제조 위탁 (X)																					